

중앙대 남성권력에 반反하다

성평등위원회 이현우

2019년 5월 1일 저녁 6시반 310관 B601호

주최: 중앙대 반성폭력반성매매 모임 반反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 외롭게 싸우는 피해자

- 어떻게 권력이 성폭력을 정당화 하는가

발제자 홍유진

1.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

지난 2018년 11월 경, 중앙대에서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었다. 학내에서는 8번째 미투이자, 경영학부 A교수 성폭력사건, 일어일문학과 K교수 성폭력사건, 국제물류학과 B교수 성폭력사건, 문화연구학과 C강사 성폭력사건에 이은 다섯 번째 권력형 성폭력이었다. 영어영문학과 교수인 A가 자신의 학부 수업을 수강중인 본교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이 더욱 문제화되었던 지점은, 다른 아닌 일어일문학과 K교수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자, A교수가 당시 문화연구학과에 참여 교수였다는 점이다. C강사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문화연구학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문화연구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C강사 성폭력 사건 당시 학과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지침을 내규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연구학과 교수진들은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다.

이번 A 교수 사건에서도 교수진의 미온적 태도는 여전했다. 문화연구학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속해 있는 영어영문학과 교수들마저도 인권센터 조사를 핑계대며 교육자로서 온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에도 여전히 교수사회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영문과 교수진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열흘이 지난 뒤에야 학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학생 대표 등 소수의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일반 학우들에게는 간담회에 대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학과 내부적인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간담회를 열어 달라', '학과 차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확답을 피하고 말을 돌리며 사실상 거절을 하였다. 교수진은 공개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사건 해결 및 피해 학생을 위한 고민은 미뤄두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만을 취했다. 교수진은 그것을 두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취한 행동이라고 언급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¹ 해당 학과 교수들의 태도는 사건 공론화 직후 A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인권센터에 인계하고, 학내 행사에서 피해자와 연대했던 영문과 학생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² 같은 집단에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수진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에 대해

¹ 잠망경, [학내]성폭력 고발, 그 이후 - 영어 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2019. <http://magazine.freecamp.kr/archives/4479>

² 잠망경, [학내]성폭력 고발, 그 이후 - 영어 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2019. <http://magazine.freecamp.kr/archives/4479>

어떠한 책임감도 없었다.

누구보다도 피해자 편에서 행동했어야 할 인권센터조차 사건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취했다. 피해자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서 A교수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과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정황을 알렸다. 종강까지 얼마 남지 않아 다른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했지만, 인권센터는 관련 대책위원회를 소집한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요구를 거절했다. 인권센터는 원칙상 사건 접수시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야하지만, 본 원칙과 다르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중재가 불발했을 경우에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열흘 간의 기피 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고 대책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려면 실질적인 대책위 활동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책위가 꾸러질 때까지 기다린 뒤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면 종강 전에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란 쉽지 않음이 자명했다. 더군다나 이전에 문화연구학과 C강사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대책위 소집 이전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절차를 핑계로 거부했다.³ 이는 인권센터가 사건을 얼마나 일관성 없이 다루는지 보여준다. 결국 영문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인권센터는 그보다 한참 늦은 기말고사 기간 중인 종강 하루 전에서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센터 대책위는 조사 결과 본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가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았다. 대책위가 A교수의 징계를 요청한 근거가 '성폭력'이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었던 것이다. 대책위의 결정사항 그 어디에서도 A교수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문구는 없었다. 다만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요청하고, 신고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해당 학과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비대위는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책위 측은 이를 기각했다. "통상적인 사제 관계를 넘어 동의 없이 개인적이고 성적인 행위로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2차 대책위 결정통지서 내용을 학내 게시하는 결정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 학내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센터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만을 남기고 가해자는 지워버렸다. 성폭력을 행한 주체는 사라졌는데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만 남은 것이다.

2. 외롭게 싸우는 피해자들

피해자와 비대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학교 차원의 무시와 2차 피해를 감내하며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야 했다. 비대위가 성명을 낸 지 이틀만인 11월 28일, 비대위의 대자보 옆에 학교 곳곳에 새로운 대자보가 붙었다. A교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자보였다. 자신을 영어영문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비대위의 공론화에 대해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며 "무지한 사람들의 만행"이라 표현하며 평소 A교수의 행실을 근거로 A교수가 무죄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땀땀하시다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라는 말까지도 첨언하면서 말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11월 29일, 이번에는 네 장 분량의 긴 글이 내걸렸다. 앞선 대자보와 비슷하게 '대한민국

³ 잠망경, [학내]성폭력 고발, 그 이후 - 영어 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2019. <http://magazine.freecamp.kr/archives/4479>

⁴ 중앙대 영문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품위 손상'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2018

헌법과 '형사소송법', 'UN 세계 인권 선언'을 인용하는 등 비대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대위는 피해자와 함께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A교수에 대한 형사소송 고소장을 사법기관에 제출하라", "비대위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지 않은 그들의 성명서를 즉각 회수하라" 등의 주장을 토해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원칙의 주체는 사법기관이다. 당연하게도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 방식과는 상관이 없다.⁵ A교수는 학생들에게 법과 제도가 절대적으로 주어진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렇기에 그것이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하여 2차 가해가 어떻게 법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신성화되는지에 대해 가르쳤다고 한다.⁶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A교수의 가르침과도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가 거짓 미투일 수 있다", A교수 옹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용자"라고 칭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불신을 기저로 깔고 사실상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12월 20일에는 법학관에 붙었던 A교수 규탄 대자보가 무단으로 뜯긴 채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를 지지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소위 말하는 '거짓 미투'를 들고나온 '꽃뱀' 취급하는 성폭력적 학내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3. 휘두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

A교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언뜻 보면 학교 외부의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사적인 만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형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형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의미한다. A교수가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 A교수가 평소 해왔던 언행 때문에 피해자가 그의 사적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모두 '교수'라는 그의 지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겨지는 안희정 사건 또한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됐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기 때문이다.⁷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가 평소 페미니즘을 포함한 인권운동 및 약자 혐오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A교수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영화를 보러 가자"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당시 본인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피해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자 수업에 왜 안 나오냐며 연락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학생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었느냐고 하자 "당연히 기억하지, 근데 난 네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한데?" "수업에 안 나오고 인간 관계 끊을 일이었어?"라고 반문했다.⁸

⁵ 중앙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녹지, "우리의 #metoo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8

⁶ 영어영문학과 안태연, 신현욱, 길예슬 학우의 성명서.

⁷ SBS뉴스,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2019년 2월 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22795&plink=ORI&cooper=NAVER

⁸ 한겨레, "'성폭력 의혹' 중앙대 교수 "인관관계 끊을 일이었냐" 2차 가해", 2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218.html?fbclid=IwAR3WuITePX5iznoF0NmhbqQ8yi1C8JqrKZk2QV-soSF76qIGqRSI_DkNf_c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⁹이었다. 특히나,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 비해 지식권력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더욱 강력하게 이뤄졌다. 피해자가 하는 말은 '뭘 몰라서 하는 말'로 치부됐다. "수업에 안 나오고 인간 관계 끊을 일이었어?"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수업에 안 나오고 인간 관계를 끊을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로,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암시하여 피해자 스스로 그 상황이 성폭력이었다는 판단을 내릴 때 주저하게 만들었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페미니즘, 특히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강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를 존경하고 신뢰했다. 피해자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형 성폭력 중 피해자가 가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더욱 괴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실력(지식적인 권위, 혹은 업무처리능력 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등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적인 예시인 '안희정 사건'과의 공통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희정 지사가 비권위적 상사로, 페미니스트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행동했다는 사실은 그가 한 여성에게 권력형 성폭력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고발하는 과정을 힘들게 했을 뿐이다.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데 일조했던 같은 과 학우들이 썼다는 A교수 옹호 대자보의 논리 또한 다시금 A교수의 권력을 상기시킨다. A교수가 평소에 권위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추구했고,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며 본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그가 위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교수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해자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점이 바로 그가 갖고 있던 위력이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 위력의 존재감은 다르게 느껴진다.¹⁰ 당장 대자보를 쓴 본인들도 새내기시절 겪은 A교수의 위력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겪은 것과 달랐을 것이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A교수의 강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도 "용자"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스승이 스스로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도 맹목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조차 가해자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었다.

4. 권력형 성폭력, 이제는 구조를 논할 때

권력형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되는 지점은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 사건 자체 이외의 부분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통 권력형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이거나, 직장 상사,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희정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이미 직업으로 삼은 분야의 권위자이거나, 이후 피해자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피해자가 희망하던 미래 진로는 알지 못하지만, A교수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서 한 가지의 진로 선택지는 완벽하게 지웠다. 자대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 A의 조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아니, 보수적인 교수사회를 미루어 봤을 때 자대 대학원 진학 자체, 혹은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⁹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으로써 타인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정신적 학대의 일종.

¹⁰ 정희진, "미투의 정치학", 2019

영원히 피해자의 인생에서 제외 시켰을 지도 모른다.

권김현영은 권력형 성폭력에서 어떤 성폭력 가해자들은 조직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권력자가 아니라 평등한 상사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된 신입 여직원에게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권위적이지 않은 좋은 상사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 전체는 그 여직원이 겪고 있는 피해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¹¹ 마치 오델라스의 희생양처럼, 한 사람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는 집단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가해자의 인생을 망쳤다는 등의 비난을 듣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권위 차로 인해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 분위기와 위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결국 사건을 공론화 한 피해자의 입지가 집단에서 좁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가 존재하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은 자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위력관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본다. 하지만 성별 자체는 이미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남성 지배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¹² 하물며 위계의 차이를 가진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 이성애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는 더더욱 없다. 또한 위력 관계에 있어, 당장 국내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은 26%에 불과하다. 정교수로 가면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여성이 17%에 불과한 것이다. 남성의 수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학 내 교육체계 하에서 유일하게 여성비율이 52%정도에 해당하던 비전임교원¹³ 또한 최근 '강사법'의 시행으로 인원 자체가 줄어줄 것을 예상한다.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구성원이 남성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학 내 권력자에 해당하는 교수진의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중심적 해석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교수 사회 전반을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 아래 답습한 기계적 종립과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권력형 성폭력은 비단 한 개인의 무지와 일탈, 비도덕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되는 학 내 권력형 성폭력의 발생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외침으로 학과에서, 동아리에서, 그들의 대학 공동체의 성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스승들이 답해야 할 때다. 의와 참의 터전에서, 교육자이자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수 사회 내 남성중심적 구조 개선과 그를 통한 그릇된 성의식 타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신지영, "그것은 썸도 로맨스도 아닌 권력입니다.", 2018

¹¹ 정희진, "미투의 정치학", 2019

¹² 이나영,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2018

¹³ "[교수성비 불균형④] 대학 안 바뀌면, 한국 사회 절대 안 바뀐다", <시사저널>, 2019년 1월 23일.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47>

대학원,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발제자 김도현

흔히 세상 정말 좁다고들 하지만 학계는 이보다도 더 좁다. 그러나 지난 해, 이 좁고 단단한 '학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에서 두 건의 미투 고발이 있었다. 정확히는 '공론화되었던' 미투 고발이 두 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제에서는 대학원에서 있었던 두 건의 미투 고발을 설명하며,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 내 뿌리깊게 자리잡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¹⁴ 권력구조를 파헤칠 것이다. 또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동체로써 학부와 대학원이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부수고 연대해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좁은 세상을 깨고 나온 두 번의 용기

첫 번째 미투 고발은 지난 2018년 3월 4일, 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강사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A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에 재학시절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달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비대위에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 A의 입장이 더 자세히 알려지게 된다. 가해자는 대학원 재학생이었던 A에게 수년 전 성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A에 대한 헐담을 하며 대학원에서 피해자 A의 입지를 좁혀갔다. 피해자 A는 이에 대한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학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또 학교가 2007년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에 그간 보여왔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A는 가해자가 자신 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피해자 A는 가해자가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해오면서 동시에 여성주의에 대한 저술과 토론 활동을 지속해오는 등 이중적인 행태로 학문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사실까지 접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A는 그간 본인의 침묵에 대해 자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심하였다.¹⁵

¹⁴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의 패이트리(patri)와 지배라는 뜻의 아키(archy)가 합성된 단어로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게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위 혹은 지배'를 의미함. 어원과 그 뜻에서 더 나아가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족, 더 나아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체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임. 가부장제는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이 중 여성을 남성의 타자로서 낮은/하위 질서에 위치해 왔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가부장제는 여러 사회 제도와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학원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가부장적' 권력구조로 해석해보고자 함.

¹⁵ 대학원 신문. 2018.05.02. [원우기자]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C 성폭력 사건.
<http://gspress.caun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24>

두 번째 미투 고발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있었다. 이는 2018년 12월 17일 대학원 신문사의 기사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으로 학과 재학생인 피해자 B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이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에 피해자 B는 동료 C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인 D가 있음을 알게 된다. D는 동료 원우 E, F에게 도움을 청했고, 동료 원우 E와 F의 권유로 이를 인권센터에 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원했던 신고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조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¹⁶ 이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가 대학원 신문에 제보함으로써 사건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2월 26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피해자연대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가해자가 저질렀던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석사과정으로 발을 들인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이어왔으며 학과 내 가해자 본인의 입지가 견재해진 시점부터 그는 더욱 대담해졌다. 가해자가 대담해질수록 피해자들은 움츠러들었고, 학술공동체에서 배제되고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간의 침묵에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오랜 시간에 걸친 학과 내 성폭력을 종식시키고 침묵의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용기를 내어 연대할 수 있었다.¹⁷

2. 학연에 얽혀 꼬여진 가방끈

두 번의 용기가 있기까지, 대학원 내의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긴 고민의 시간들을 버텨야만 했다. 무엇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했을까. 두 건의 미투 고발을 통해 우리는 대학원 내의 피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두려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겪었던 두려움에 대해 '학술공동체에서 배제되고 기반을 잃을까' 두려웠고, '학문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고 일관되게 표현했다. 학부에 비해 대학원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속한 학술공동체와 본인이 앞으로 가야 할 학문적 미래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대학원'이라는 학술공동체는 단순히 그 범위만 보더라도 학부보다 훨씬 좁아진다. 학부 수업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 수업을 듣는 반면 대학원 수업은 적게는 5명, 많아도 15명 내외로 확 줄어든다. 또한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체 재학생 수도 2018년도 기준 2,131명으로 전체 학과 수 84개로 나누면 학과당 재학생 수는 평균 약 25명에 그친다.¹⁸ 전체 수가 적어진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는 좁아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하는 상황도 잦아진다.

문제는 이와 같은 특성이 학술공동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계가 좁다'라는 특성은 학술공동체 이후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우선, 학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479416285461508/posts/1617322991670826?sfns=xmo>

¹⁶ 대학원 신문의 2018년 12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 신고가 아닌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는 '대리인 신고 접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인권센터는 개입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해야함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인권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¹⁷ 대학원 신문. 2018.12.17. [온라인단신] 인권센터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35>
 대학원 신문. 2019.03.06. [포커스] 그렇다, 혼자만은 아니다.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62>

¹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학술공동체에서 받는 '학위'가 필수적이다. 또한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어지는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입지를 잡아가는 데에 있어서 학술공동체를 통해 얻는 '학연'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학계에서 일할 때는 물론, 전공과 관련한 직종에서 일할 때, 혹은 일하고자 할 때조차 항상 이 학연을 필요로 한다. 가해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인 학술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 입지가 견고해졌다고 느꼈을 때에는 피해자들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작업은 물론, 지속적으로 더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사해왔다. 그렇다. 그들은 본인들이 속한 학술공동체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침묵하게 했다. 학계의 특성은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좋은 조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지를 좁히기 이전부터, 여성에게 학계란 원래부터 더 좁은 곳이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대학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은 26%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교수 비율만 놓고 보면 여성 비율은 17%로 더 떨어진다. 그러나 비전임교원, 그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강사'는 여성이 54%로 남성보다 많다.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고, 매년 박사 취득자의 36%가 여성인 지금¹⁹, 대학 교수 성비의 불균형은 여성이 학계에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수 성비의 불균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²⁰ 한국사회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대학 뿐이고, 이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 방향에 대학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여성, 남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느끼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수 사회는 이미 과거 여성이 공부하는 것조차 어렵던 시절부터 교수가 된 남성들이 그 꼭대기에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자리를 '남자 후배'에게 한정된 학연주의라는 문화로 계속해서 유지해 오면서 남성중심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차별이 만연한 구조에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답습과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상실감 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가 단순히 대학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구조가 아님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학계는 물론 전공과 관련한 업계, 아니 사실 모든 고용시장에서 긴 시간 누적되며 공고해져 온 남성중심적 차별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학계에서 또 학계와 관련한 업계에서 가해자를 퇴출하는 대신 본인이 퇴출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남성중심적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힌 한국에서 미투 고발은 주로 피해자 개인이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²¹ 대학원 피해자들의 용기에도 그들의 생계와 안위가 걸려있다. 피해자들은 권력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그들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권력이었던 '학연'을 버리고, 학연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성중심적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가자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

¹⁹ 시사저널. 2019.01.23. [교수성비 불균형①] 단독 - '강사' 女 많고, '정교수' 男 압도적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39>

²⁰ 시사저널. 2019.01.23. [교수성비 불균형④] "대학 안 바뀌면, 한국 사회 절대 안 바뀐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447>

²¹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 (2019). 미투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3.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학술공동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형식적인 사과를 통한 가해자와의 거리두기, 책임회피에만 힘을 썼다. 문화연구학과와 학술공동체는 과거 성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에 미숙했음에 대한 인정과 실태조사 대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이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한 행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를 폄하하는 2차 가해자들이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8월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과를 내렸으나²² 이는 학술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 피해자를 계속해서 가해하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사회복지학과와 학술공동체에서도 일부 원우들 사이에서 사건에 대한 구과(口過)가 이어지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해왔다.²³ 이에 학과 차원에서 추측성 발언을 금하는 공지가 내려지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성폭력사건 피해자 연대가 본인들의 심정과 함께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대학원 입구에 부착했던 입장문 대자보와 지지메시지를 담았던 포스트잇들이 전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²⁴ 이러한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가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강간문화에 침묵하면서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의 영향이 크다. 남성중심적 사회 아래, 학교, 학술공동체, 학계, 그리고 관련한 모든 직종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침묵하거나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거나 두 가지 선택권만이 주어질 것이다.

4. 목적을 잃은 공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이룩과 헌신적인 사회복지 인력의 양성, 한국적 사회복지의 개발 및 토착화라는 교육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는 한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비평능력,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창안하는 기획능력, 창의적 대안들을 문화현장에서 실현하는 정책능력을 갖춘 문화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원장은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의와 참'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번영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지식을 추구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으로 설명한다.

²²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AUculturalstudies/posts/1815866188483171?_tn_=-R

²³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연대. "그러나 혼자만은 아니다".

²⁴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연대.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이제 학교는 남성중심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남성중심적 권력 구조 아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또는 한국사회의 문화발전, 그리고 '의와 참'은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바꾸는 것은 연대에서 시작할 수 있다. 더 이상 권력구조에 존속하기 위해 침묵하지 말고, 이 침묵의 구조를 바꿔 나아가자. 이것이 학부와 대학원이 연대해야 하는 이유이자, 대학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주었던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알 수 없음

발제자 신지영

‘알 수 없음’ 본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단어다. 서울캠은 물론 안성캠의 학생들도 안성캠에 몇 번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서울캠에서 9번의 미투가 있는 동안 안성캠에서는 몇 번의 외침이 있었을까. 결국 그 숫자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본 발제에서는 안성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기구인 성평등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길 잃은 안성캠의 성정치

지난해 많은 우려 속에서 안성캠퍼스의 총여학생회가 폐지됐다. 그리고 지난 4월에서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가 인준됐다. 무려 5개월 간의 공백이었다. 안성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은 공백기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안성캠 내에서 관련 문제 발생 시 내정자와 총학생회장단이 같이 해결하겠다”라고 답해왔다. 하지만 인준 받지 않은 내정자와 인준 받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바는 분명 다르다. 게다가 안성캠 총학 회칙 제22조 3항에 따르면 확운위 내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이 직권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 즉, 총학생회의 의지만 충분히 있었다면 이러한 5개월의 공백은 없었을 테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총학생회는 5개월의 공백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는 “총여학생회 폐지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라며 총여학생회를 폐지했던 때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안성캠에는 이제 더 이상 총여학생회가 필요 없을까? 성평등위원회 정도는 5개월 동안 없어도 되는 상태일까?

지난 해 사진학과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A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사건은 인권센터를 통해 처리과정을 밟은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현재 안성캠퍼스 인권센터의 연구원은 단 한 명으로,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해서 대책위가 꾸려지면 서울캠과 연계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초기 처리과정은 단 한 명이 맡는다(이는 모순적이기도 하다. 현재 인권센터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은 접수되는 대로 대책위를 꾸리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 서울캠퍼스 인권센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관료주의화로 이어진다. 단적인 예가 바로 비밀서약서다.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있는 비밀서약서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피해자 대리인에게까지도 무조건적인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후다. 비밀서약서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함이며, 본 서약서가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를 막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진학과 A사건의 경우

비밀서약서는 피해자의 보호가 아닌 가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 실제로 과 내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가해 학생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자, 인권센터는 가해학생의 신변 노출을 우려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밀서약서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다. 처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려주는 인권센터의 '선의'가 없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사진학과 A사건의 처벌 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외국인 교수의 비판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교의 묻어주기식 처벌 방식을 비판하는 대자보였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해당 교수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며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고, 그 때서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사건으로부터 고립된 채 인권센터의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학과의 구성원 그 누구도(피해자 조차도) 학과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한 셈이다. 실제로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가해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 또한 본인들의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인권센터를 신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도권 내 기구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관료화 될 때 이를 견제하고 사건 해결을 도와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자치기구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안성캠 후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피신고인의 핸드폰에서는 신고인의 사진 이외에도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 2,000여 장이 함께 발견됐다. 불법촬영 문제는 최근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이에 맞춰 안성캠 총여는 안성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외국어문학과와 원형관의 화장실 및 휴게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탐지기를 활용해 이뤄졌다. 그러나 생활관 샤워실 및 화장실 조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주기적으로 제기되던 문제 중 하나인 내리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안심귀가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규찰대와 총여 임원이 학생의 귀가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못한 채 기획단계에서 멈췄다. '여학생휴게실 비상벨 설치 및 학생증 태그제도'나 사각지대 CCTV설치 문제 등도 지난 총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이처럼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이유가 많지만, 총여는 없어졌고 성평등위원회는 무려 5개월만의 공백 후에야 인준됐다.

2. 78.9km만큼의 거리

올해 수 많은 강의들이 개편되면서 안성캠퍼스의 페미니즘 강의는 완전히 없어졌다. 어쩌면 이 또한 총여의 폐지처럼 학교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여전히 안성캠에 총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성캠퍼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치안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가 없어지고, 5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 동안 서울캠퍼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매년 초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안성캠 학생들과 서울캠 학생들 사이의 기싸움이 벌어진다. 그 싸움의 주내용은 안성캠은 본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캠은 이미 14년에 총여학생회가 없어졌고,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여성혐오글이 올라온다. 서울캠 사람들에게

안성캠의 소식은 아무 상관없는 소식 혹은 (꿀 보기 싫은 총여가 없어졌으니)반가운 소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까지 안성캠과 서울캠의 소식이 남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78.9km.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다. 하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의 미투가 있었는지조차 모를만큼의 거리감이 되어서는 안 될 숫자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해야한다. 그 시작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위원회에 기대합니다.

5개월의 공백을 지나 인준이 된 만큼 이번 안성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많다.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총여학생회가 없어진 후 처음 생기는 성평등위원회이니 더욱 그렇다. 작년 총여학생회가 없어질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 총여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연 간담회는 전학대회 바로 전날이었으며, 공지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졸속으로 열린 간담회는 그조차도 녹취와 녹화를 금지하고 언론사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체 학생 총투표도 아닌 전학대회 의결로 안성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사라졌다.

총여학생회의 대체 기구인 성평등위원회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학대회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없으며 회칙 수정 및 집행, 안건 상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가 없어질 당시 사람들은 성평등위원회가 성적소수자까지도 폭 넓게 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학운위에서 발표한 성평위의 사업 중에는 성소수자 동아리와의 연대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평위는 성소수자 동아리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성캠의 새로운 성평등위원회에 기대한다. 그 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안성캠의 성정치가 다시금 제 길을 걸어가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길을 적극적인 연대와 활발한 소통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또 다른 가해자, 인권센터

발제자 신지영·박하람

2012년 2월, 중앙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기존에 있던 성평등상담소를 확대개편하여 인권센터가 총장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센터가 훨씬 독립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²⁵ 그러나 지금의 인권센터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타 대학보다 더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작년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인권센터가 담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막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 관료화된 기관으로 전락한 인권센터

현재 중앙대학교의 공식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기구인 인권센터다.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담·신고접수·대책위원회운영·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성폭력의 사건 종료에만 치중하는 관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센터의 구조적 한계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 혹은 이를 인지한 사람은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신고를 접수한 인권센터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대책위 구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인/피해자에게 중재를 먼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피신고인/가해자가 수용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위 구성 과정으로 넘어간다. 규정과는 달리 중재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인권센터의 물리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인권센터장, 피해자 소속부서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센터전문연구원, 학생처장 등으로 구성된다.²⁶ 이렇게 큰 규모로 구성되는 대책위를 동시에 다수 운영해야 한다면 인권센터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²⁵ 중앙대, 국내 대학 최초 '인권센터' 설립, <중앙일보>, 2012/03/12, <https://news.joins.com/article/7595147> (2019/04/27-접속날짜)

²⁶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 13조

이러한 실질적 어려움은 인권센터가 사건 해결이 아닌 사건 '중재'에 힘쓰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고용제도는 사건의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 현재 인권센터의 고용체계는 계약직이다. 그래서 이전의 사례들을 질문할 때마다 인권센터는 그 때 일하던 연구원들이 없어서 알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당연하게도 현실적인 규정의 개선이나 사건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해결, 일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제도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인권센터 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사건당사자간합의서

신고 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인권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와 '사건 당사자 간 합의서'로 피해자들에게 제약을 가한다. 두 문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상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처럼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인권센터 운영 세칙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²⁷ 비밀유지서약서는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센터는 이 문서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받고 있다. 문제는 인권센터가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사건 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가해자의 신변노출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약서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추후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할 때 이것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쓰일 여지가 존재한다. 일례로 안성캠퍼스 사진학과와 성폭력 사건을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인권센터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밀유지서약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신변 노출을 걱정했다.

게다가 현재 인권센터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건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조항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건처리를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응용통계학과 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방문했을 때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을 요구받았다. 추후 공론화를 언급하며 서명하기를 꺼리자 서명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중재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는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센터는 여기서 다른 방법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절차로 모든 문제를 봉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는 추후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거나, 사건에 대한 재정의의 하고 싶을 때에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활동에 제약을 거는 셈이다.

우리는 비밀유지서약서와 사건당사자간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밀유지서약서와 사건당사자간합의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대 인권센터의 서약서는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²⁷ 인권센터 운영 시행 세칙 제 22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서약서와 합의서의 구체적·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2. 인권센터의 가해자 중심적 시각

신고절차 외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작년 3월, 동아리 Muse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은 성행위'라고 표현하면서도 이에 걸맞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신체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 후에는 더 이상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신고인의 이의제기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신체 접촉 때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신체접촉을 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대책위는 이 사건에서 피신고인에 교육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만을 내렸다. 대책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동의 받지 않은 성행위가 곧 성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결과다.

인권센터는 최종 징계를 내릴 수 없지만, 대책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징계기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징계요청이 최종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권센터의 미진한 징계수위는 심각한 문제이다.

작년 5월, C-mash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을 고수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대학교의 운동 동아리(C-mash)에서 내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일이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동아리 임원들에게 사건의 공론화를 요구했으나 임원들은 이를 회피했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답도 받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동아리 구성원으로부터 별다른 응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운함을 느낀 피해자는 동아리원들과 다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피해자는 일부 동아리원에게 폭언했다. 이를 계기로 임원들과 관계자들만의 단체 카카오톡방이 만들어졌는데, 그 방에서 그들은 피해자를 헐뜯고 피해자의 제명을 논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책위는 피신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고인이 행한 폭언에 대해 신고인이 사과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제외한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헐뜯은 것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다툼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차 피해를 겪고 있던 고립된 신고인의 상황을 제거한 채, 신고인의 욕설을 동아리 집단의 신고인 헐뜯 및 제명논의와 1대1로 등치 시켜 쌍방과실 처리한 것은 신고인의 입장과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중립에 근거한 판단이다.

권김현영에 따르면, 무엇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지식은 부분적이며,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관한 페미니즘 정치학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가해와 피해의 서사가 서로 다를 때 누구의 해석을 사회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인가라는 차원의 해석 투쟁이다.²⁸ 인권센터는 성폭력에 대한 가해와 피해의 서사의 해석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주체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볼 때, 인권센터는 해석 투쟁에서 가해자 중심적 시각을 내면화하여 성폭력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인권센터의 관료화

지난해 9월, 응용통계학과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인권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기 위해 인권센터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문에 가해행위를 상세하게 적지 말자고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공개 사과문에서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명시될 경우 그 사건의 행위 자체에만 관심이 쏠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고인은 '입을 맞추는 우를 범했다'는 표현을 '추행'으로 고칠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쓴 대리인에게 신고인이 녹취한 면담내용을 공유한 것을 인권센터는 '유출'이라 표현하며 앞으로 서면 연락만 할 것을 통보했다. 그 결과 신고인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사과문 재검토를 진행하지 않았고, '입을 맞추는 우를 범했다'라는 구체적 표현이 사과문에 실리는 날까지 신고인은 합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인권센터가 서면 통보한 이후 신고인은 인권센터로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건처리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센터의 대응은 실제 사건 해결에 힘쓰기보다, 사건에 관료적으로 대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공론화된 영어영문학과 A교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²⁹ 인권센터는 2차 대책위 결정 통지서에서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면담으로 사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사제 관계를 넘어 동의 없이 개인적이고 성적인(Sexual) 행위로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의 성폭력과 관련해 교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라는 조항에만 근거해서 징계를 요청했다. 결정문 어디에도 해당 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A교수의 징계를 요청하는 근거 조항으로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포함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권센터는 이를 기각했다. 성폭력 사건임을 분명 인권센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품위유지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 것은 인권센터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왜곡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권센터의 절차상의 문제도 제시되었다. 작년 1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³⁰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은 인권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절차에 따라 대리인 신고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인권센터의 개입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익명 신고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직접 방문해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고지된 "피해자 또는 대리인도

²⁸ 권김현영 외 4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11쪽.

²⁹ 중앙대 영문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품위 손상'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2019/03/18.

³⁰ 인권센터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대학원신문>, 2018/12/17 15:07:45,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35> (2019/04/27-접속날짜)

신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항의했지만, 인권센터는 대리인 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불가피한 상황은 '피해 당사자가 진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실제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절차와 실제 사건처리가 다른 것은 결국 인권센터가 관료화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신고 절차 방안을 마련한 것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절차는 허울에 불과했다. 결국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절차를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4. 인권센터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인권센터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에 골몰하는 관료화된 기관에 가까워 보인다. 인권센터는 '피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피해'의 범주를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만 했다.

중앙대에서 현재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식 부서인 인권센터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유일한 루트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대책위를 꾸리기보다 중재, 곧 합의를 중용하며,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이후 공론화를 막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계적 중립성과 미진한 징계수위를 내세우며 학내의 성폭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사건의 해결 및 종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 사건의 '해결'에 치중하는 운영 방식,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센터의 현 상황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17년 9월,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중앙대학교의 인권센터가 타 대학에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센터는 어떠한가. 국내 대학 최초라는 타이틀은 형식적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타 대학의 인권센터를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타 대학의 인권센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겨우 징계 3개월을 권고했다. 그러나 타 대학의 인권센터 사례들을 요청했을 때 미진한 징계수위를 제외하고 다른 측면에서 인권센터가 논란이 된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³¹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발화점이 되어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고발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성폭력 경험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앞장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있음을 고발했다. 분명 성평등한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서있다. 변화는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여성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³¹ 실제로 연락한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였고, 이를 제외한 타대학들은 직접 연락하기 쉽지 않았다. 인권센터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사건 공론화 단체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더 이상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³² 점차 대학 사회도 성폭력 구조를 타파하고 성평등한 학내를 이루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센터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뒤로 물러가 침륜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센터의 변화를 원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전문성이 있고 보다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센터의 인력을 원한다!

둘째,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인권센터의 규정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셋째, 합리적 여성 관점³³으로 사건의 이해와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상 인권센터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발제를 마친다.

³² '스쿨미투' 가해교사 '셀프징계' 사라진다, <한국일보>, 2019/03/28 18:0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81708026419> (2019/04/27-접속날짜)

³³ 합리적 여성 관점은 '인식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를 뜻한다. '인식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를 성희롱 판단 기준에 도입하자는 제안은, 남성 중심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판단을 배제하고 무시해 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 여성' 관점을 도입하자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 여성 관점은 특정 행동에 대한 성별 관점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합리적 여성이라면 충분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만한 행동인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다. (권김현영 외 4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45-46쪽.)